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37 제출연월일: 2024. 7. 23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7조(벌칙)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9조(과태료)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아 혂 제77조(벌칙) ① 제76조를 위반한 제77조(벌칙) 제76조를 위반한 자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 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 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제79조(과태료) ① 제20조제3항 <신 설>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 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 • 징수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
1	안 제79조(과태료)	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.	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9조(과태료)	제3호 :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* 과태료 부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을 것이며, 동 인증제도를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으므로기술적 추계가 어려움.

2. 상세 사유

○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을 것이며, 소프트웨어 품질인증('01)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('09) 제도를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으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O 해당 없음.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・국장
이보름	박선경	장두원	황규철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경	044-202-6331	sK0918@korea.kr